

공사대금에 압류·가압류 설정돼 있어도 “하도대금 직불 가능”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되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크게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 사건개요

3개의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5월 23일 원사업자 N사,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도 교차로 개선 공사’(공사금액 10억4천422만원)와 관련 하도급 받은 하도급대금 전부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직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5년 5월 27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원사업자 N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합계 7억3천여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이어 하도급 3사와 N사는 11월 22일과 12월 22일 등 2회에 걸쳐 기성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3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도달한 N사 채권자들의 압류 등과 비교, 효력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3사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때에 발주자인 피고의 원사업자인 N사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했으므로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전주지법은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되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하도급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련 “하도급거래는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적시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토록 한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이 일반채권자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본다는 점에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지만,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도급채권에 관한한 수급사업자와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직접지급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을 구할 권리가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 판결의 의의

그동안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들간에 벌여온 하도급대금 직불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논란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애매한 법조항을 둘러싸고 벌어졌었다.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항 규정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로 볼 것인지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 발주자들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제3자가 직불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 하도급대금직불제도가 실제로는 하도급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이에 반해 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3자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전주지법이 전문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줌으로써 공사대금이 압류됐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설비를 비롯한 전문업계에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